

##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29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처

	주소	연락처
서울광역시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9층	02-6711-280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051-520-05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062-949-870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647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053-609-050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042-620-560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052-226-051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층, 13층	031-259-7149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가경동) KT 3층	043-230-711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0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선로 251(고용노동부전주지청 4층)	063-240-8500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형읍 후광대로 242(전남개발공사 B/D 7층)	061-288-8700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00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055-269-0510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8층	02-6924-87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02-2086-80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053-650-6810
경기도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41-4900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00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천혜제일빌딩 2층	031-481-7599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금곡동, 소곡회관 2층)	031-785-3300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7,8층	031-995-6581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043-849-1000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033-820-2580
전라북도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063-460-3600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선원동 1285) 우. 555-801	061-689-4900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054-271-2016
경상남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조합청사4층	055-371-7500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이 정비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23.9.27)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 중 안전보건교육 주요 내용

###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시행규칙 제29조)

-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2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시행규칙 별표 4)

-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별표 4 제1호가목)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별표 4 제1호 비교 2)
-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채용 시·정기·작업내용 변경 시·특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별표 4 제1호 비교 3)
    -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별표 4 제1호 비교 4, 5)
-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하여 규정 (별표 4 제1의2호 신설)

### 3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시행규칙 별표 5)

- ▶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관리감독자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별도 규정(별표 5 제1의2호)
  -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
  -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 ①에 관한 사항은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이 '21.6.27.이후인 시점부터 적용  
②, ③에 관한 사항은 '23.9.27.이후부터 적용

### 4

## 기타 개정사항

- ▶ (제26조 제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 (제27조제2항) 분기 → 반기
  - ▶ (제28조제3항) 교육생 관리 →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 ▶ (제31조제7항)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신설
  - ▶ (별표 5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40호 → 제39호, <개별내용>의 35.란 허가 및 관리 대상 → 허가 또는 관리 대상
-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항, 제28조제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라. 특별교육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 시간으로 한다.
  -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 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 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